

##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| 변경 전   | 변경 후  |
|--|---|
| 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~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&lt;신설&gt;</p> | 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2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p> |
| 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C클래스 수익증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&lt;신설&gt;</p> <p>②~⑤ (생략)</p>               | 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C클래스 수익증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2. S-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   |
| 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 | 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  |

|   |  |
|---|--|
| <p>1. (생략)</p> <p>2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(생략)</p>   |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| 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2. S-P클래스 수익증권</b></p> <p><b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2</b></p> <p><b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</b></p> <p><b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b></p> <p><b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b></p> |
| <p>&lt;신설&gt;</p>   | <p><b>부칙</b></p> <p><b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b></p>  |